

특별공급 공통 안내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th> <th>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th> <th>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방법	장소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	2020.06.03 (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0.06.10.(수) 확인방법: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0.06.11.(목) ~ 2020.06.15.(월) [5일간] (10:00~17: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p>※ 당사홈페이지(www.더샵송도센터리얼.kr)에서 선착순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0.06.22.(월)~2020.06.26.(금) [5일간] (10:00~17: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기관	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2.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3.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요건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 종사자
통장유무 기간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범위 내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청약제도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 하여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착오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소형·저가 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로 간주 합니다.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75A	84A	84B	84C	84D	98A	98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2	2	1	1	-	7
	10년 이상 복무 군인	1	2	2	1	-	-	6
	국가 유공자 등	1	2	1	1	-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1	-	-	-	3
	중소기업근로자	-	2	1	-	-	-	3
	북한이탈주민	-	2	-	-	-	-	2
합 계	3	12	7	3	1	-	-	26